

제246회임시회
2006. 1.26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
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월 13일(충청북도교육감)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1월 24일(제3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관리국장 신강탁)

가. 제안이유

- 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보정정원)이 재산정 고시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, '05. 12. 21)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와 제2항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정원을 2,985명을 3,072명으로 87명을 증원하는 것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재준)

-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보정정원)이 재산정 고시됨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은
2006~2007년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일반직 23명, 기능직 24명

《학교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현황》

년도	학교명	학급수	일반직	기능직	계	비고
2006	비봉초	30		1	1	
2007	원현초	30	2	3	5	
	새별초	30	2	3	5	
	운동중	24	2	2	4	
	송절중	24	2	2	4	
	장전초	30	2	3	5	
	원현중	24	2	2	4	
	장전중	24	2	2	4	
	송절고	30	3	2	5	
	산남고	30	3	2	5	
	목령고	24	3	2	5	
합계	11개교		23	24	47	

-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설치에 따른 일반직 22명 증원
 - 각 지역교육청별 : 일반직 2명(6급 1명, 7급 1명)
-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원지원인력 18명 증원으로
- 학교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
 - 지역교육청별의 혁신업무인력 증원의 필요성
 -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원지원인력은 그 증원 인력의 필요성, 소요인력수, 배치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- 2006년 학교신설 1명 및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 22명은 증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2007년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46명과 교원업무경감 인력 증원 18명은 증원의 시급성이 없고 인력증원의 세부추진계획의 미 수립으로 정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함

나. 주요내용

-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“3,072명”을 “3,008명”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“3,059명”을 “2,995명”으로 함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89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- 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보정정원)이 재산정 고시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, 2005. 12. 21)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,985명에서 87명이 증원된 3,072명으로 함(안 제2조)
 - 정원의 총수 : 2,985명 ⇒ 3,072명(증 87명)
 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 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2,972명⇒3,059명(증 87명)

□ 개정근거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, 제17조, 제19조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
-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
[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, 2005.12.21)]

개정 조례안 : 붙임

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2,985명”을 “3,07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2,972명”을 “3,05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,985명</u>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972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<u>3,072</u> 명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 <u>3,059</u> 명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개정 2004.1.29 대통령령 제8247호)

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표준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제19조(정원의 규정) ①시·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(개정 2004.1.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)

제3조(표준정원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③영 제14조제2항에서 “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”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(이하 “보정정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-2206, 2005.12.21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3,072	3,164	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6년 1월 24일

제안자 : 이 범 윤 의원외

□ 제안이유

- 2006년 학교신설 1명 및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 22명은 증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2007년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46명과 교원업무경감 인력 증원 18명은 증원의 시급성이 없고 인력증원의 세부추진계획의 미 수립으로 정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함

□ 주요내용

-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“3,072명”을 “3,008명”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“3,059명”을 “2,995명”으로 한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개정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“3,072명”을 “3,008명”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“3,059명”을 “2,995명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도교육청 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의 총수는 <u>2,985명</u> 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 기관, 지역교육청소속기 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972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<u>3,072명</u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3,059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<u>3,008명</u>....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2,995명</u></p>